



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규정

[시행 2016. 4. 27.] [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1575호, 2016. 4. 27., 일부개정.]

강릉원주대학교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보건과 복지 및 대학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
2.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
3. 간호와 건강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
4. 사회 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
5. 다문화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
6. 간행물의 발간,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
7.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과제의 수행
8. 기타 이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이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부와 학술부를 둔다.

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기획부는 연구소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
2. 학술부는 조사연구, 학술활동, 간행물발간, 연구발표 및 강연회, 연구 과제수행 등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장 등) ①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,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, 이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각각 1인을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과 연구보조원) ① 이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자문위원) ① 이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이 연구소 관련분야의 교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되,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사업계획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사업실적의 분석과 평가
4.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이 연구소의 재정은 이 대학교의 보조금,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,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이 연구소의 회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6. 4. 27.>

제9조(회계년도)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.<개정 2016. 4. 27.>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01575호, 2016. 4. 27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